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
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금강수계관리기금 용도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657호, 2023. 8.16. 공포, 2024. 2. 1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수도법」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·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(안 제35조제10호 신설)
- 나.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 사업(안 제35조제11호 신설)
- 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(안 제35조제12호 신설)
- 라.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·보수 사업(안 제35조제13호 신설)
- 마. 유출·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·관리 사업(안 제35조제14호 신설)

바. 홍수·가뭄을 위한 대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
(안 제35조제15호 신설)

사.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(안
제35조제16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”을 “사업이나 비용의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제1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6호(종전의 제10호) 중 “금강의 수질개선을”을 “금강수계의 물관리를”로 한다.

10. 「수도법」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·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
11.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 사업
12.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
13.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·보수 사업
14. 유출·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·관리 사업

15. 홍수·가뭄을 위한 대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기금의 용도) 법 제33조제 1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<u>사업</u> 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말한다.	제35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 <u>사업이나 비용의 지원</u>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「수도법」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·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 업
<u><신 설></u>	11.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 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 급망 구축 사업
<u><신 설></u>	12.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 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 업 지원
<u><신 설></u>	13.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· 보수 사업
<u><신 설></u>	14. 유출·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 · 관리 사업
<u><신 설></u>	15. 홍수·가뭄을 위한 대응 조

10. 그 밖에 <u>금강의 수질개선을</u>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 업	<u>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</u> <u>에 대한 지원</u> 16. ----- <u>금강수계의 물관리</u> <u>를</u> ----- --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물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52